

교회 임직자 선거관리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(규정의 명칭)

이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임직자(장로, 안수집사, 권사 포함) 선출을 위한 규정 (이하 규정)이라고 한다.

제 2 조(규정의 근거와 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(순장)총회헌법(이하 헌법이라 한다)을 근거하여 임직자 선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들레이드 장로교회(이하 교회라 한다) 내에서만 적용한다.

제 3 조(임직자 선거의 실시)

임직자 선거는 필요에 따라 당회 결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

제2장 선거권

제 4 조(선거권의 자격)

① 선거권의 자격은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하고 교회 교인*(청년부/EM 포함)으로 등록후 6개월이상 경과한 만 18 세 이상의 세례(입교)교인으로 한다. (이하 모든 기간, 나이는 선거일 기준으로 한다)

※ 청년부와 EM (English Ministry) 자체 성도관리 시스템 인정

청년부와 EM 의 경우 새가족 교육수료와 교회교인 등록은 청년부/EM 자체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한다.

② 새가족부가 생기기 전의 교회교적등록 입교교인은 선거권이 자동부여된다

③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간 만 18 세 이상의 세례(입교)교인에게는 선거권이 자동부여된다

④ 당회는 치리회의 권징을 받은 자,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덕적, 법률적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 당회의 의결로 상기 ①②③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

제3장 피선거권 (임직자 후보의 자격)

제 5 조(피선거권자의 자격)

1. 장로후보의 자격

① 장로는 만 40 세 이상된 남자 교인으로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교회 안 밖에서 칭찬을 들으며 본 교회에서 임명된 시무안수집사로 서리집사 포함 만 5 년 이상을 흠 없이 봉사하고 디모데전서 3 장 1-7 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② 교회가 인정한 타 교회에서 이명한 무임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될 수 있으며 협동장로가 되면 당회의 언권회원과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고, 성찬예식 때에는 성찬을 나누는 일도 할 수 있다. 또한 당회는 이명한 무임장로가 만 3 년이 지나면 공동의회에서 3 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고, 노회 면접을 거친 후, 시무장로로 받을 수 있다.

③ 타 교회에서 이명된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서 시무안수집사로 신임을 얻은 후 만 3 년이 지나야 장로 피택 자격을 줄 수 있다. 단, 타 교회에서 임직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회에서 임직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2. 안수집사후보의 자격

① 안수집사는 만 35 세 이상 된 남자 교인으로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며 그의 생활이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듣고 본 교회 서리집사로 만 3 년 이상을 흠없이 봉사하는 자라야 한다(딤후 3:8-13).

② 교회가 인정한 타 교회에서 이명된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임직증빙 후, 당회가 협동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고 협동안수집사 시무 후 만 1 년 경과 후 당회는 공동의회에서 찬반여부를 투표로 물어 3 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수없이 시무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. 단, 타 교회에서 임직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권사후보의 자격

- ① 권사의 자격은 연령이 만 45 세 이상 된 여자 교인으로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며 그 생활이 교회 안 밖에서 칭찬을 듣고 본 교회 서리집사로 만 5 년 이상을 흠 없이 봉사하는 자라야 한다.
- ② 교회가 인정한 타 교회에서 이명된 권사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임직증빙 후, 당회가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고 협동권사 시무 후 만 1 년 경과 후 당회는 공동의회에서 찬반여부를 투표로 물어 3 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무권사로 임직 될 수 있다. 단, 타 교회에서 임직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(후보자의 선정 방법)

후보자 선정은 위에서 언급한 장로의 자격, 안수집사의 자격, 권사의 자격의 기준을 통과한 안수집사 혹은 *서리집사로 1 차 투표 (공동의회의 의한 후보자 선거)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당해 선출하기로한 각 임직자 수의 1.5 배수 이내를 공천한다. 단 1 차 투표에서 2/3 이상 득표자는 당선자로 인정 2 차투표시 후보에서 제외한다 (30 조 투표 참조).

*서리집사 임명자격기준 참조

제 7 조(후보자 선정과 1, 2 차 투표 시기)

- ① 임직자 후보자 선정을 위한 1 차 투표는 후보자 *명단 발표 약 한달 후 진행한다. 단 당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다.
- ② 2 차 투표를 위한 후보자 *확정 공고는 2 차 투표 1 주일 전에 완료 한다. 공식 명단 발표와 함께 2 차 투표 시기의 공고를 하도록 한다. 2 차 투표의 시기는 후보자 명단 공고 1 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회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당회가 연기 또는 변경 할 수 있다.

*공식 명단 발표는 주보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후보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충분한 정보의 시간을 위해 당회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과 확인 후 즉시 교회 리더자 SNS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(제 10 조 참조).

제 8 조(선출 임직자의 수)

당해 선출하는 각 임직자의 수는 당회의 결의로 결정한다

제 9 조(후보자 인쇄순서)

후보자 인쇄순서는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

1. 장로: 안수집사 임직순. 임직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. 그 다음은 본 교회 등록순
2. 안수집사: 본 교회 등록순. 등록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순
3. 권사: 본 교회 등록순. 등록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순

제 10 조(후보자 공고)

- ① 1 차 투표 후보자 등록공고는 최소한 선거일 한달 전에 한다. 2 차 후보자 등록공고는 1 차 투표를 통하여 결정 된 2 차 투표 후보자 확정 1 주 후에 공고한다(제 7 조 참조).
- ② 공고방식은 당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에서 위임을 받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

제4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 11 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

임직자 선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

제 12 조(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시작)

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60 일 전에 구성하여 업무를 시작한다

제 13 조(선거관리위원장)

선거관리위원장은 당회장이 지명하여 당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개표까지 업무를 담당 관장한다.

제 14 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

선거관리위원은 당회원, 전임교역자, 비전임 교역자 및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성도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조직 구성하여 당회의 동의 후 최종결정 한다.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도와 임직자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

제 15 조(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의 구성)

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

제 16 조(선거관리위원회 분과의 구성)

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과를 구성해야 한다.

1. 선거규정 검토분과
2. 후보자 선정/공천 심사분과
3. 선거 집행분과

제 17 조(선거규정 검토분과)

- ① 선거규정 검토 분과는 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개선안을 논의한다
- ② 선거규정 검토 분과장은 당회장이 하고 검토분과 위원은 당회원으로 한다

제 19 조(후보자 선정/공천 심사분과)

- ① 후보자 선정/공천 심사분과는 임직자 후보의 공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
- ② 후보자 선정/공천 심사분과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회원중 1 인을 지명한다
- ③ 분과원은 당회원으로 한다.

제 20 조(선거 집행분과)

- ① 선거 집행분과는 투개표 업무 및 선거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
- ② 선거 집행은 투개표 업무는 당회가 하고 선거홍보와 선거집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

제 21 조(선거 장소의 준비)

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의회 투표에 참가하는 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해야한다.

제5장 선거인 명부

제 22 조(선거인 명부의 작성)

선거인 명부는 후보자 공고 1 주 전에 작성하고, 명부 작성시까지 새가족 교육수료 후 교회등록 6 개월 이상 된 세례/입교 교인을 모두 포함한다

제 23 조(선거인 명부의 열람)

- ① 선거인 명부는 명부 작성 다음 날부터 선거당일까지 열람기간을 갖는다. 누락된 자는 각 교회기관 담당자와 새가족부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쳐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
- ② 열람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

제6장 선거 홍보

제 24 조(선거운동의 제한)

- ①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17 장 교회 의사규정 제 90 조 선거와 투표에 의거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홍보 외에 일체 홍보행위를 금한다

※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17 장 교회 의사규정 제 90 조 선거와 투표

- 교회적인 선거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해야 한다. 그러므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.
- 연기명 투표에 있어서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것은 무효로 하고 그 이하를 기입한 것은 유효로 한다.
-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백표와 잘못 기록한 것은 무효로 하되 잘못 기록한 것은 총 투표수에 계산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총 투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.

제 25 조(선거홍보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성도들이 투표에 관심을 갖고,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(교회 웹사이트, 주보, 구역예배, 전도회, SNS 등)를 통해 홍보해야한다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도들이 합리적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직자 후보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

제7장 선거 방법

제 26 조(선거방법)

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17 장 교회 의사규정 제 90 조 선거와 투표에 의거,

① 임직자 선거는공동의회에 의한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.

② 연기명 투표 방식을 택하나 정원수(당해 임직자 수)를 초과하여 투표용지에 기록할 경우 무효로 하고 그 이하를 기입한 것은 유효로 한다.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미리 넣어 여러명을 기표하는 방법(연기명 기표 방식)을 택할 수도 있다.

※ 연기명 투표 방식이란 여러명의 직분자를 뽑을 때 선거인이 한개의 투표 용지에 정원 수대로 피선거권자(선거 후보자)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. 단 피선거권자(선거 후보자)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미리 기입할 경우 미리 기입 된 이름 빈칸에 ○ 표 또는 정원수(당해 임직자 수)에 따른 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.

③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백표와 잘못 기록한 것은 무효로 하되 잘못 기록한 것은 총 투표수에 계산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총 투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.

제 27 조(선거시간)

투표시간은 선거당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공동의회 회장(당회장 목사)의 공동의회 선포 후 실시한다. 투표 종료시간은 각 예배 후 30 분 까지로 하며 마감시간 전에 투표장에 입장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.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상황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28 조(투표자 본인확인)

투표 참가자는 실명확인 가능한 증표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학생증 등 사진 부착된 것)를 지참해야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. 단 증표가 없이도 실명이 확실하게 대면으로 확인이 가능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투표에 참가하도록 한다.

제 29 조(투표용지 재발급)

한번 인증 된 투표용지는 재발급하지 않는다

제 30 조(1 차 투표와 2 차투표)

- ① 1 차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당해 선출하기로한 각 임직자 수의 1.5 배수 이내를 공천한다.
- ② 2 차 투표는 1 차 투표 당선자를 제외하고 당해 선출하기로 한 각 임직자 수의 1.5 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 2 차 투표에 비록 당해 목표 임직자 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종 당선자로 임직수를 제한한다.

제 31 조(투표의 마감)

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 차 투표로 모든 투표를 마감한다

제 32 조(기표방식)

기표는 당해 선출하는 임직자 수 이하로 해야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가 된다(제 26 조 선거방법 참조).

※ 헌법에 의거 연기명 투표에 있어 계표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수 초과를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정한다.

제 8 장 개표 및 당선

제 33 조(개표)

투표가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투표함을 이동하며, 당회원과 감사위원의 입회하에 개표를 실시한다. 개표위원은 당회원이며 개표 감사위원은 본 교회의 시무장로로 봉사하셨던 은퇴 장로 중 두명 이상으로 당회가 지명하여 공정한 개표를 위한 *감사위원으로서의 도움을 요청한다. 단 개표의 결과는 당회원도 감사위원도 발표전 까지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.

*감사위원: 개표의 공정성을 위해 개표에 참석하도록 선정된 위원을 뜻한다.

제 34 조(백표, 잘못 기록한 투표지)

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에 관한 사항은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17 장 교회 의사규정 제 90 조 선거와 투표의 내용을 따른다 (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17 장 교회 의사규정 제

90 조 선거와 투표 제 3 항과 규정에서 위 제 7 장 선거방법 제 26 조 선거방법 제 3 항 참조)

※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17 장 교회 의사규정 제 90 조 선거와 투표 제 3 항: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백표와 잘못 기록한 것은 무효로 하되 잘못 기록한 것은 총 투표수에 계산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총 투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.

제 35 조(당선)

- ① 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임직자 수 이내로 당선된다
- ②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4 장 서리집사와 권사 제 17 조 권사 제 3 항 선거와 임기에 의거하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
- ③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5 장 집사 제 20 조 집사의 선거와 고시에 의거하여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
- ④ 헌법 교회정치 총론 제 6 장 치리장로 제 29 조 장로의 선거와 고시에 의거하여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
제 36 조(동점자)

동점자의 경우는 교회에 먼저 등록한 자가 우선한다.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당회가 그 상황에 따라 변경 제안을 할 수 있으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교회에 공고하여 공동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37 조(당선자 공고)

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마무리 된 후 즉시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당회장은 즉시 공표하며, 이를 게시 공고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당회의 결의 후 당회의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한다
2. 본 규정은 당회 결의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
3.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현재 2024 년 3 월 3 일 제정